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4. 25(목) 10:00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98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2. 제안이유

협치회의 위원 수 확대와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협치 회의를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 정비

나. 위원 정원 확대 및 구성 기준 정비(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)

다. 위원 구성 시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독려 조항 신설(안 제9조제5항 신설)

라. 위원 임기 기준 구체화(안 제10조제2항)

마. 협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(안 제13조제1항 및 제17조)

4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협치회의 위원 정원 확대 및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계층 참여 독려 조항을 신설하며 정기회 개최 횟수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9조에 소수의 협치위원으로서의 의제발굴의 한계에 따라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, 협치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- 안 제13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함.

-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함.

○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협치회의 정례회 개최 횟수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2.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현황 1부. 끝.

붙임 1 **관계법령**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붙임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현황

연 번	지자체명	위원 수	정 기 회	기본계획	위원 모집	비 고
1	중랑구	3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	
2	관악구	4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	
3	금천구	3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	기존
		50명	**연 2회**	**5년**	**추천, 구의원 2명, 공개모집**	**변경**
4	성동구	50명	연 4회	3년	구의원, 추천, 공개모집	
5	강서구	3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	
6	구로구	35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	
7	서대문구	50명	연 4회	4년	시의원2명, 구의원2명, 공개모집, 추천	
8	노원구	40명	연 4회	3년	공개모집, 구의원2명	
9	은평구	3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	
10	광명시	25명	연 2회	4년	**시의원, 추천**	
11	안양시	50명	연 2회	4년	시의원, 추천,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	
12	인천 서구	30명	연 2회	3년	추천, 구의원	
13	인천 연수구	30명	연 2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, 연구원 또는 학계전문가, 민관협치 관련 업무 공무원	
14	인천 미추홀구	20명	연 2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	
15	인천광역시	40명	연 2회	3년	추천, 시의원, 공개모집	
16	광주 광산구	25명	연 2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	
17	광주광역시	50명	연 4회	3년	추천, 공개모집	
18	부산시	30명	연 4회	3년	추천, 공개모집	
19	부산 북구	20명	연 4회	3년	추천, 구의원2명, 공개모집	
20	제주도	20명	연 2회	5년	추천, 도의원	
21	충남	30명	연 2회	5년	추천, 도의원	
22	경기도	100명	연 1회	4년	추천, 도의원, 공개모집	